

「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년 7월 31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18년 8월 6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38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18년 8월 6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도시주택과장 주현관)

가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권고사항 등의 반영으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선·보완하여 선진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제명 개정 :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
-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을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로 법률명 변경사항 반영
(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)
- 기금의 재원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따라 변경사항 반영(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)
- 위원회 명칭 변경사항 반영(안 제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최순철)

- 본 조례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
-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제명과 근거 법령명을 수정하고 “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”에 따라 조문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“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옥외광고정비기금”을 “옥외광고발전기금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”을 “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”로 하며,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광고물등의 정비·개선

제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옥외광고업자”를 “옥외광고업자 등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제4조 제목 “(기금의 관리·운용)”을 “(기금의 운용 및 관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세입·세출예산외 현금계좌”를 “세입·세출예산외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”를 “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
심의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1인을 포함한 10인”을 “1명을 포함한
10명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옥외광고정비기금”을 “기금”으로 한다.

제7조 제목 “(위원의 해촉)”을 “(위원의 위촉해제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
의 부분 중 “해촉”을 “위촉해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상실한”을 “잃은”
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통할한다”를 “총괄한다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”
로 한다.

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</u></p>	<p><u>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</u></p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옥외광고물 등 관리법</u>」 제6조의2에 따라 <u>광고물 등의 정비</u>를 통해 <u>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</u>하기 위하여 <u>옥외광고정비기금</u>을 설치하고, 그 관리 및 운용에 <u>필요한 사항</u>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</u>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<u>필요한 사항</u>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2조(기금의 재원) <u>옥외광고정비기금</u>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「<u>옥외광고물 등 관리법</u>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6조제4항에 따른 <u>옥외광고사업 수익금</u> 중 <u>균에 배분되는 수익금</u></p> <p>2. ~ 6. (생략)</p> <p>7. <u>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</u></p>	<p>제2조(기금의 재원) <u>옥외광고발전기금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「<u>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</u>」-----</p> <p>-----</p> <p>2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
<p>제3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다</p>	<p>제3조(기금의 용도) ① -----</p>

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
활용목적에 사용한다.

1. 광고물 등의 정비

2. 경관개선

3.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
및 지원

4.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

5. 6. (생략)

② (생략)

제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기
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
입·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
리한다.

② (생략)

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
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
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옥
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
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
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
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
한다.

③ ~ ⑤ (생략)

제6조(위원회의 기능) ① 위원회

-----.

1. 광고물등의 정비·개선

<삭 제>

3. 옥외광고업자 등-----

4.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
사항

5. 6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조(기금의 운용 및 관리) ① -
----- 세
입·세출예산외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

----- 옥
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
-----.

② -----
- 1명을 포함한 10명 -----

--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위원회의 기능) ① -----

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관리·
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
을 심의한다.

- 1. ~ 4. (생략)
- ②·③ (생략)

제7조(위원의 해촉) 군수는 다음
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
해촉할 수 있다.

- 1.·2. (생략)
- 3. 위촉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
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
상실한 경우
- 4.·5. (생략)
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
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
통할한다.

- ② (생략)

제9조(간사 및 수당) ① 위원회에
간사 1인을 둔다.

- ② (생략)
-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
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
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
급할 수 있다.

제11조(회계공무원) ① (생략)

- 기금-----

-----.
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- 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위원의 위촉해제) -----

위촉해제-----.

- 1.·2. (현행과 같음)
- 3. -----

없음 -----
- 4.·5.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 -----

총괄한다.

- ② (현행과 같음)

제9조(간사 및 수당) ① -----
-- 1명-----.

- ② (현행과 같음)
- ③ -----

---- 범위-----
-----.

제11조(회계공무원) ① (현행과

<p>②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「회계관계직 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」을 준 용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같음)</p> <p><삭제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